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83 발의연월일 : 2025. 3. 13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박충권

엄태영 · 김기웅 · 김소희

구자근 • 이상휘 • 신동욱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 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,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	제64조(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
대한 세액감면) ① 다음 각 호	대한 세액감면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	
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	
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(이	
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	
이라 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에	
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	
면한다.	
1.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「산	1. <u>2028년 12월 31일</u>
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	
률」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	
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	
발사업을 하는 내국인	
2.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「지	2. 2028년 12월 31일
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	
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	
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	
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	
중소기업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